

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. 9. 16. 목
보건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08. 23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 371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08. 26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【2021. 09. 08. 상정·원안가결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민지선 복지문화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(안 제1조 ~ 제2조)
-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,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, 제도변경 사항
 - 노래연습장업자 신규등록자 의무교육(3시간)

- 교육의 위탁,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(안 제4조 ~제5조)
 - 교육 위탁(수탁자)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마련
 - 교육대상, 교육참석, 교육내용, 교육시간 등 규정 마련
- 교육실시 방법,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~제7조)
 - 재난·재해 시 교육방법 규정 마련
- 교육교재 배부, 교육의 유예 및 면제, 교육 이수자 관리, 과태료 부과 징수 관한 사항 (안 제8조 ~ 제11조)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」 (약칭 : 지방일괄이양법) 제13조
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 「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, 제16조
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1. 07. 15. ~ 2021. 08. 04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동성)

가. 개요

- 본 조례안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음악산업법”이라 함)제11조¹⁾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와 제4조는 「음악산업법」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교육에 따른 위탁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교육실시에 따른 방법과 강사료 지급 근거 및 교재 배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교육대상자의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과 교육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「지방 일괄이양법」이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, 기존 「음악산업법」에서 대통령

1)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령으로 정하도록 했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,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- 2021. 8월 말 기준, 성북구의 노래연습장 점검대상은 140개소이며, 행정조치 12건, 현장계도 68건, 과태료 4건에 528만원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사항이 발생 되고 있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필요하다 사료됨.

〈노래연습장 점검 현황〉

(8월말 기준)

구 분	점검대상	점검누계	행정조치	현장계도	과태료
노래연습장	140	632	12	68	5,280천원(4건)

관 계 법 령

■ 지방일괄이양법

제13조(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)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“를 “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“이라 한다)“로, “대통령령이“를 “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“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“을 각각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“으로 한다.

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“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2. 21., 2020. 2. 18.>

[시행일 : 2021. 1. 1.] 제11조

제3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>

제16조(권한의 위탁)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, 「문화산업진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.

②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19. 10. 7.] [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, 2019. 10. 7., 타법개정]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6. 4.>

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 : 회의록 참고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